2013년 10월 23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0월22일(화) 15:00 이후 보도 가능
www.smba.go.kr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보 도 자 료

성장 징검다리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문의 : 중기청 기업혁신지원과 원영준 과장(042-481-6830), 진수웅 사무관(6832),
하나은행 정책금융부 최원실 부장(02-2002-1182), 이재형 차장(139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반팀 한상영 팀장(02-6009-3140), 김한준 책임(4354)

중소·중견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정부/기업/은행간 협업의 산물

– 제2기 희망엔지니어 적금 출시

□ 10.22일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하나은행은 **제2기 희망엔지니어 적금 출시를 발표**하였음

* 10.22일 14:30~16:00 하나은행 본사 대회의실

□ 희망엔지니어적금은 **중소·중견기업 핵심 기술인력의 사기진작과 장기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금융상품으로,

○ 중소·중견기업의 **입사초기 높은 이직률 문제를 해소**하고자 금년 1월 처음 도입됨

* 중소중견기업 실태조사(12년 중견련) : 이직의 97.6%가 5년 이내에 발생
* 제1기 희망엔지니어적금 13.1~3월 모집, 757개 기업, 1,461명 가입

○ 기업과 기술인력이 **5년 이상 장기근로를 조건으로 매칭·적립**하면, **만기시 기술인력이 기업·인력의 원리금 전액을 수령**하게 됨

○ 대신, **기술인력의 자발적인 퇴사로 중도해지시** 기술인력은 **본인이 납입한 원리금만 수령**받게 됨

*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시 적립된 원리금 모두 개인 수령

		기업납입금 및 이자	개인 납입금 및 이자
5년 만기납입		개인 수령	개인 수령
중도해지	자발적 퇴사	기업 수령	개인 수령
	기업 귀책사유	개인 수령	개인 수령

□ 희망엔지니어적금은 **정부3.0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기업/은행이 함께 협업하는 프로그램**으로,

○ **기업**이 핵심 기술인력에 대한 보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희망엔지니어 적금에 가입하면,

○ **정부**는 가입기업에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글로벌 전문기술 개발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등 각종 정부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등을 제공하고,

< 가입기업 인센티브 >

구 분	사업명
우대가점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 (중기청),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중기청),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중기청),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중기청), 글로벌전문기술 개발사업 (산업부),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산업부)
지원자격	산학협력선도기업 지원사업 (산업부)

○ **하나은행**은 가입자에 시중은행 최고금리 수준인 **최대 4.63%**(급여이체시)를 제공

* 시중은행 5년만기 적금금리 2.4~3.5%

□ 적금 가입대상은 **매출 1조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입사 10년차 이내 기술인력** 중 소속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이며,

○ 적금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10.28일부터 하나은행 홈페이지 (www.hanabank.com)**를 통해 가입할 수 있음

○ 상담 및 문의는 하나은행의 **희망엔지니어 적금 전용 콜센터 (1599-0079)**를 통해 받을 수 있음

□ 한편, 이날 **중소기업청과 하나은행은 「중소·중견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지원을 위한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음

○ **하나은행은 World Class 300 프로그램의 공식 지원기관**으로 참여하여 100명의 전담 RM을 통한 1:1 밀착지원을 제공하고,

○ **희망엔지니어적금 가입기업 및 중소기업청 선정의 글로벌 강소기업·글로벌 하이웨이 선정기업**에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함

* 무역금융 등 우대금리, 신기보 특별출연 금융지원 등 우선배정, 임직원 복지 포탈(알토란) 및 포인트 혜택, 기업 CEO 대상 가업승계 및 자산관리 등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 진수웅 사무관(☎ 042-481-68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제2기 희망엔지니어적금 사업 안내문

1. 사업개요

□ 중소·중견기업 핵심 기술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해 희망엔지니어적금 프로그램 도입

○ 기업과 기술인력이 5년 이상 장기근로를 조건으로 적금을 매칭·적립

○ 만기시 기업과 개인 납입 원리금 전액을 개인이 수령하고, 중도해지시 개인 납입 원리금은 개인이, 기업납입 원리금은 귀책사유에 따라 수령자를 달리함

2. 사업내용

□ **(대상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매출액 1조원 미만 기업)

-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의한 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이라 함은「산업발전법」제10조의2에 의한 기업을 말함
  (다만, 본 사업에서는 **전년도 결산**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 기업으로 한정)

* 중소기업의 경우 : 중소기업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제출

* 중견기업의 경우 : 중견기업확인서 및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 증빙서류 (요약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

□ **(대상인력)** 상기 소속기업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10년차 이내 기술인력**

* 중소·중견기업은 동일금액 또는 반액을 매칭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자체적으로 추천

** 2003년 1월 1일 이후 입사한 고졸 이상의 연구개발, 기술직, 생산직, 정보통신 업무관련자로서, 기업근무를 증빙하는 재직증명서 제출 (사후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중도해지)

□ **(가입기간)** 5년

□ **(지원조건)** 기업과 기술인력이 5년 이상 장기근로를 조건으로 적금을 매칭·적립

- 적립금액 : 정기적립식
- 이 자 율 : 급여 이체시 4.63%, 급여 비이체시 0.5%p차감
- 모집금액 : (근로자) 10, 20, 30, 40, 50만원
  (기업) 기업은 근로자 납입금의 동일금액 또는 반액 매칭
- 모집은행 : 하나은행

3.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교부 및 제출방법**

○ **(신청접수)** 하나은행 홈페이지(www.hanabank.com) 상단부 중앙 기업뱅킹 Hana CBS light 클릭하여 온라인 신청,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 **(신청기간)** 2013년 10월 28일 ~ 2014년 6월 30일

○ **(신청방법)** 기업 인터넷뱅킹가입 → 희망엔지니어적금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 온라인 신청서 입력 → 하나은행 방문접수

□ **접수・문의처**

○ **(접수)**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

○ **(문의)** 하나은행 희망엔지니어적금 TEL : 02) 2002-1357, 1599-0079(전용콜센터)
E-mail : jinyeoungkim@hanafn.com

4.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안내	중소기업청 및 KIAT 사업공고	2013.10.28
⇩		
온라인 사전등록 (기업)	하나은행 홈페이지 내 희망엔지니어 사업관리 시스템	2013.10.28 ~ 2014.6.30
⇩		
창구방문 및 계좌개설 (근로자)	중소・중견기업 추천 직원	2013.10.28 ~ 2014.6.30
⇩		
적금 납입	중소・중견기업 추천 직원	-
⇩		
적격검증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		
만기금 지급	하나은행	60개월 만기

* 상기 일정은 잠정안이며 추후 주관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구비서류

○ 대상기업

- 중소기업의 경우 : 중소기업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첨부2 참조>
- 중견기업의 경우 : 중견기업확인서 및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 증빙서류 (요약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 희망엔지니어 근로자 신청서 <첨부3 참조>
- 소속근로자 재직증명서 (연구개발, 기술직, 생산직, 정보통신 관련 부서 표기)

○ 대상인력

- 희망엔지니어 근로자 신청서 <첨부3 참조>
- 소속 근로자 재직증명서 (연구개발, 기술직, 생산직, 정보통신 관련 부서 표기)

6. 관련법령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15조(인력확보의 지원)

7. 가입기업 인센티브 <첨부1 참조>

○ 정부 R&D 및 인력사업 **우대가점 부여** :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글로벌 전문기술 개발사업,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 정부 R&D 및 인력사업 **지원자격 부여 :** 산학협력선도기업에 지원자격을 부여

* 다만, 우대가점, 지원자격 또는 의무가입 조건으로 정부 사업에 선정된 이후에는, 희망엔지니어 적금을 중도해지할 수 없음 (중도해지시 사업선정 취소 등 상응하는 조치 가능)

8. 기타사항

○ 본 사업 대상 인력은 희망엔지니어 적금 신청서를 작성해야함

<첨부1>

가입 기업 인센티브

□ 정부 R&D 및 인력사업 **우대가점 부여**		
①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중소기업청)	중소·중견기업이 World Class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패키지로 공급(기술확보, 시장확대, 인력확보, 자금지원, 컨설팅) ㉠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대상기관 선정 우대 ㉡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R&D 사업 선정 우대
②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중소기업청)	FTA 대응 글로벌 전략품목 및 녹색, 첨단기술 분야 등 혁신기업의 미래 성장유망 기술개발 지원
③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중소기업청)	수요기관(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사업
④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중소기업청)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마크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50~90%)
⑤	글로벌전문기술 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한 품목(핵심기술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전문기업(혹은 히든챔피언)으로 육성
⑥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중소·중견기업에 이공계 석·박사 우수 연구개발인력을 공급하여, 기업과 인력간 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과 고급연구인력 일자리 창출
□ 정부 R&D 및 인력사업 **지원자격 부여**		
	산학협력선도기업 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기업 주도형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발굴 및 지원하여 기업의 산업기술 R&D 경쟁력 강화 및 산학협력 체제 구축

* 다만, 우대가점, 지원자격 또는 의무가입 조건으로 정부 사업에 선정된 이후에는, 희망엔지니어 적금을 중도해지할 수 없음 (중도해지시 사업선정 취소 등 상응하는 조치 가능)
* 세부적인 우대방안은 14년초 개별사업별 사업공고문에서 명시

<첨부2>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08호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2.4.1>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상호(법인명)	법인번호(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결산일(설립일)
사업장 주소	전 화( ) 휴대폰( )

구 분			적합 여부
업종별 규모기준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의 요건이 업종별 규모기준에 적합하나요?		
	주된 업종		예 / 아니요
	상시 근로자 수	명	
	자본금	원	
	매출액	원	
상한기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나요?		
	상시근로자수(1,000명 미만)	명	예 / 아니요
	자산총액(5,000억원 미만)	원	
	자기자본(1,000억원 미만)	원	
	3년 평균 매출액(1,500억원 미만)	원	
독립성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나요?		예 / 아니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지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지 않나요?		예 / 아니요
	다른 법인과 출자 관계에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합산한 상시근로자수 등이 업종별 규모기준 또는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하나요?		예 / 아니요
유예기간	유예기간 중인가요?		예 / 아니요 / 해당없음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기관명 귀하

서약서

위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귀속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기관명 귀하

(유의사항)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旣지원 받은 사항은 무효 또는 취소 및 회수됩니다.

< 작 성 요 령 >

법인사업자로서 다른 법인과 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은 모든 란에 체크하고, 법인사업자로서 다른 법인과 출자관계가 없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①~④까지만 체크

① 주된 업종 : 해당 기업이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기재(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름)

② 업종별 규모기준 적합 여부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와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의 요건에 적합하면 "예" 에 체크하고, 두 가지 요건에 모두 부적합하면 "아니요" 에 체크. 이 때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매출액)은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매출액)을 적용

주된 업종(대분류 기준)	규 모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농업·임업 및 어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상시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하수처리·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③ 상한기준 적합 여부 : 상한기준 모두에 적합 할 경우 "예" 에 체크하고,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하면 "아니요" 에 체크

④ 유예기간 적합 여부 : 업종별 규모기준에 "아니요" 를 체크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지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예" 에 체크하고, 3년을 경과한 경우 "아니요" 에 체크. 업종별 규모기준에 "예" 에 체크한 경우 "해당없음" 에 체크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 에 체크하고, 해당하면 "아니요" 에 체크

⑥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 에 체크하고, 해당하면 "아니요" 에 체크

⑦ 관계기업과 합산하여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산총액, 자기자본, 3년 평균 매출액 등이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모두에 적합하면 "예" 에 체크하고,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하면 "아니요" 에 체크

※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 회원가입 후 해당기업의 관계기업 여부 등 중소기업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진단 기능을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설명>
- 상시 근로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자본금 :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에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산 금액
- 자기자본 :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을 뺀 금액
- 자산총액 :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총계
- 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3년 평균 매출액 : 지난 3개년간의 매출액을 합하여 3으로 나눈 금액

<첨부3>

희망엔지니어 적금 근로자 신청서 (근로자 대상)

1 가입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기 업 명			
근무부서(업무)		직 위	
입 사 일		최종학력	
연봉(퇴직금제외)		학과(전공)	
전화번호		이 메 일	
월납입금 선택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2. 본인은 희망엔지니어 적금에 가입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본인이 개설한 계좌에 적금기간(5년)동안 월납입금을 매월 납입한다.
   나. 근무 회사의 파산, 본인의 퇴사, 휴직 등으로 인한 계약의 중도해지나, 납입중지시에는 별도의 하나은행 약관에 따른다.

3. 본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희망엔지니어 적금가입 취소 등을 감수하겠습니다.
   가. 희망엔지니어 신청서류 중 허위사실이 추후 발견된 경우
   나. 기타 본 적금의 기본 취지 훼손 등으로 적금가입이 불가하다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판단하는 경우

4. 본인은 희망엔지니어 적금의 신청규정을 명확히 숙지하고 정확히 준수하겠으며, 만약 이의 불이행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5. 본인은 상기 신청서와 연계하여, 본인의 소속기업이 본인의 월납입금과 동일한 금액 또는 반액을 납입하는 것에 동의하고, 본인의 소속기업이 희망엔지니어 적금에 신청하는 별도의 규정도 명확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위의 사실을 확인함

(기업명) 가입자 : (인)

<첨부서류>

○ 엔지니어 입증 서류 : 재직증명서 (연구개발, 기술직, 생산직, 정보통신 관련 부서 표기)
  * 다만, 재직증명서의 부서명으로 엔지니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이상으로서 이공계학과·전공을 증빙하는 최종학력증명서 추가 제출 가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귀하